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7

발의연월일: 2024. 6. 17.

발 의 자:박 정·어기구·강유정

송옥주 · 김정호 · 민병덕

문금주 • 이재관 • 김남근

소병훈 • 이언주 • 정준호

조 국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함으로써 진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소관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여 왔음.

그런데, 1967년 이후 DMZ 지역 민간인들의 고엽제 노출 피해 사례가 발생하여 왔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진실규명을 위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군인에 해당하는 피해자만을 그 적용 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DMZ 지역 고엽제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들의 진실규명은 미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진실규명의 범위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부상·질병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이와 관련한 진실규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조사기간 관련 규정을 함께 연장 및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고엽제[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에 의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사항

제25조제1항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 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u>.</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
	의 통치시까지 고엽제[대한민
	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
	方限界線)의 인접지역에서 나
	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
	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에
	의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
	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언은 사항
<u>6</u> . (생 략)	<u>7</u> .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	제25조(조사기간) ①
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	
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	<u>5</u>
<u>년간</u>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u>년간</u>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②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	
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	
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u>1년</u> 이	<u>2년</u>
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